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

(남창진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414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2월 04일  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동길, 경기문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형재, 김혜영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유진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서준오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영실, 이종태, 이효원, 정준호, 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1명)

## 1. 제안이유

-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지능지수가 70~85 사이의 학생을 말하며 학습과 함께 사회성, 관계성,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식의 습득을 위한 도움이 필요함.
-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학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바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계선지능”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.
2. “경계선지능 학생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경계선지능 학생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4.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진단검사)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,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조사
  2.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
  3.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
  4.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·학습능력 발달과 정서·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
  5.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지원기관과 연계
  6.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의 전문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